■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[별표 1] <개정 2022. 2. 25.>

국유재산법에 의한 재산관리관 등 지정

직 명 / 기 관		재 산 관 리 관	분임재산관리관
대 법 원 법원행정처		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	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(일반회계·등기특별회계·사법서비스진흥기금 시설공사 관련 사항)
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		사무국장, 그러나 동급의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토지 및 그 지상에 설치된 국유재산은 직근상급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 소속 사무국장	
고 등 법 원 특 허 법 원 지 방 법 원 가 정 법 원 행 정 법 원 회 생 법 원		사무국장, 그러나 고등법원과 다른 법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토지 및 그 지상에 설치된 국유재산은 고등법원 사무국장, 동급의 법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토지 및 그 지상에 설치된 국유재산은 직근상급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법원 소속 사무국장	
지원	사무국 설치지원		사 무 국 장
	사무과 설치지원		사 무 과 장